

의안번호	2206601
의 퇴 인	안상훈의원
회 답 일	2025.02.27.
추계번호	24C601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41조의6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 구축· 운영 등)	○ 요양기관은 제41조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환자안전 및 과도한 의료이용의 방지를 위하여 정한 대상질환에 따른 인정횟수 등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다른 요양기관에서 실시한 요양급여 내역 등을 실시간으로 연계하여 확인할 수 있음(제1항) ○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내역의 입력·연계 등 관리를 목적으로 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함(제2항) ○ 보건복지부장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음.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요양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함(제3항) 1.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2.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과 요양기관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간의 연계 ○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함.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야 함(제4항)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41조의6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 구축· 운영 등)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 구축·운영 등(안 제41조의6)

- 개정안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이하 “가입자”)의 의료과다이용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입자가 다른 요양기관에서 실시한 요양급여 내역 등을 요양기관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함
- 개정안에 따라 각 요양기관에서 이용할 수 있는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 구축·운영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인프라 증설 비용을 산출하여야 하나, 개정안은 요양급여내역 확인이 필요한 ‘대상질환’의 선정을 하위법령으로 위임하고 있어 현시점에 시스템 설치의 대상이 되는 요양기관의 종류, 필요 정보량 등이 정해지지 않아 현시점에 이를 합리적으로 가정하기 어려움
 - －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한방 추나·첩약 관련 진료내역과 요양급여 제공횟수 등을 조회할 수 있는 “한방 추나·첩약 수진자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
 - － 이는 한의원 및 한방병원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개정안에 따라 대상 질환의 범위가 확대되는 경우 시스템을 사용하는 요양기관의 수와 정보량이 증가하므로 이를 원활하게 수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 인프라 증설이 필요함
 - － 예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관리항목을 의료 과다이용이 많은 항목 중 하나인 신경차단술, 물리치료로 확대할 경우 약 7만 7,000개 의료기관¹⁾을 대상으로 연 최소 1억 5,000만건 이상의 시스템 이용이 필요함
 - － 다만, 개정안은 시스템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대상질환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시스템 구축에 따른 비용의 규모를 예상하기 어려움

1) 참고로, 약국을 포함한 2024년 4분기 기준 전체 요양기관의 수는 10만 3,308개소이며, 개정안은 “요양기관에서 실시한 요양급여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약국에서 행하는 약제 및 치료재료의 지급도 이론적으로는 시스템 운영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

-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 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Ⅲ.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임슬기	이진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임슬기	02-6788-4740	sg.lim@assembly.go.kr